

2022년 제5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규직 전환 조건부(전문의_외과) 직원 모집 공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울의료원에서는
최고의 공공병원 실현을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직종별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종별 모집인원

직종(직급)	진료과	인원(명)	세부 응시자격	비 고
전문의 (정규직 전환조건)	외과	1명	<p>[필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사면허 소지자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지도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유방 또는 갑상선 전임의 이수 포함 관련분야 전문의 1년 이상	

나. 채용조건

고용형태	채용 세부조건
계약직 (정규직 전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약기간 : 임용일 ~ 1년계약직 1년 근무 후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정규직 전환 조건부 채용의 경우,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

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2. 담당 업무

직 종	담당업무
전문의 (정규직 전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무설명서(첨부파일) 참조

※ 서울의료원은 강남분원 운영 및 서울시로부터 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을 위탁받아 수탁운영 중으로 강남분원 및 수탁병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수 있음

3. 근로조건

- 가. 보수는 서울의료원 규정에 따름
- 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취업규칙」에 따름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공무원 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됨

4. 시험전형일정

원서접수	1차 전형(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	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일시 및 장소	
2022.01.14.(금)~ 2022.01.24.(월)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개별통보	개별통보	개별통보

※ 원서접수는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서 등록으로 함.(마감 16시00분)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방법

-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55점)

- 심사기준 :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55점 만점으로 함

-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45점)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의료인으로서의 정신자세
- 합격자 선발기준 : 2차(면접)전형시행 후 1차 전형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다.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MMPI)

※ 신체검사는 2차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

6.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
- ② 자기소개서 1부
- ③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1부
-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 1부
- ⑤ 의사 면허(자격)증 1부
- ⑥ 전문의 자격증 1부
- ⑦ 경력증명서(해당자) 및 자격증(해당자) 1부
- ⑧ 연구실적 (해당자) 1부

※ ① ~ ②항 서류는 공통사항으로 모두 제출(접수방법 : 의료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③ ~ ④항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 해당자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제출

⑤ ~ ⑧항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7. 기타사항

가. 1차 전형 합격자는 인성검사,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미검사 또는 이상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력서의 주소란에 항시 연락 가능한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바.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각 만점의 5~10%의 가산이 있습니다.

- 사.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복지카드)제출 시 서류 전형 시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 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 성적순에 따라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예비합격자 개별통보)
- 자.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차.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원조회(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이의제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운영팀(☎ 2276-8099)으로 문의 바람.

2022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